

부산지방법원 2022. 10. 25 선고 2022가단2281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전 문

원 고 A 주식회사

소송대리인 B

피 고 C

변 론 종 결 2022. 9. 27.

판 결 선 고 2022. 10. 25.

주 문

1. 피고와 D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20. 12. 1. 체결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.
2. 피고는 D에게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등기국 2020. 12. 2. 접수 제76126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3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기초사실

가. D은 2020. 1. 28.부터 원고 회사 신용카드로 물품 등을 할부 구매하다가 2020. 12. 28.경부터 그 카드대금을 연체하기 시작하였다. 원고는 D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21차전102946호로 신용카드 이용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21. 2. 18. 'D은 원고에게 12,134,75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'는 취지의 지급명령을 받았고, 위 지급명령은 2021. 6. 16. 확정되었다.

나. D은 2020. 12. 2. 피고에게 유일한 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(이하 '이 사건 부동산'이라고 한다)에 대하여 2020. 12. 1.자 증여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부산지방법원 등기국 접수 제76126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주었다.

[인정근거] 갑 제1 내지 4호증(각 가지번호 포함), 부산진구청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, 변론 전체의 취지

2. 판단

가. 원고의 D에 대한 신용카드 대금 채권은 D이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할 당시 이미 발생하였으므로 피보전채권이 된다.

나.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고 볼 것이므로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는 추정되는 것이고, 이를 이전 받은 자가 악의가 없었다는 입증책임은 수익자에게 있다(대법원 2001. 4. 24. 선고 2000다41875 판결 참조).

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D이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한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사해해위라고 할 것이므로, 이 사건 증여계약을 취소하고,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D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.

3. 결론

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.

판사 김정우

별지목록

1. 부산광역시 동구

대 63㎡

2. 부산광역시 동구

[도로명주소]

부산광역시 동구

조적(벽돌)조 스라브지붕 2층 단독주택

1층 31.84㎡

2층 30.86㎡



- 관할동기소 부산지방법원 동기국 -

